

#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·시행



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,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. 특히 Back to Back 원칙(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)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.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‘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’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[편집자주]

##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주요내용

### ■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

○ 제정일 : 2014. 6. 30, 시행일 : 2014. 7. 3.

### ■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주요내용

- 유보금 조항 삭제
  - 해외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유보금 등 하도급계약에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코자 유보금 조항 삭제
- 하도급법 준수 원칙(제1조)
  -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법을 준수

- 계약금액 조정, 하도급대금지급 Back to Back 원칙 배제(제22조, 제31조)
  - 계약금액 조정(설계변경, 물가변동, 공기연장)과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계약내용으로 적용하는 Back to Back 원칙 배제하고 국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표준계약서와 동일 적용
- 현지법인 설립 강요 금지(제6조)
  -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하도급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함
- 과도한 보증요구 및 보증기관 지정금지(제7조)
  -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, 원도급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
-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(제4조, 제20조, 제32조)
  -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·부당한 위탁취소·부당감액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전예방 효과 제고
-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(제37조)
  - 설계변경, 추가 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함
- 분쟁해결기관 설정(제38조)
  - 분쟁 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을 지정

**■ 기대효과 및 향후 정부 계획**

- 해외건설시장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함으로써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  - 특히 계약서 제정을 위한 관련단체, 건설업체 등과 간담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해외건설시장에서도 국내 건설업체 간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
-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
-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업 관련 단체에 통보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 동 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
-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 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도 함께 평가 실시할 예정

